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,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 삭제(안 제15조제7항)

-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(2024. 11. 29.)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함.

나.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휴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10항)

- (신설)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: 특별휴가 3일 부여

다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(2025. 2. 11.)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
- (기존) 배우자 출산휴가 10일
- (확대) 배우자 출산휴가 20일(다태아 25일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2. 21. ~ 3. 13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7항 중 “없으며,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”를 “없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5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<u>20(다태아 25일)</u>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입 양	본인	20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현 행				개 정 안				
[별표 5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5조제1항 관련)				[별표 5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5조제1항 관련)				
구 분	대	상	일 수	구 분	대	상	일 수	
결혼	본인		5	결혼	본인		5	
	자녀		1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자녀	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	1	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	1
출산	배우자		10	출산	배우자		20 <small>(다태아 25)</small>	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	1	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	1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5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5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		3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		3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	5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	3	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	3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	1		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1	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	1	
입양	본인		20	입양	본인		20	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				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		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25. 2. 11.)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[행정안전부 예규 317호]

VIII. 휴 가

4. 휴가종류별 실시방법

라. 특별휴가

(1) 경조사휴가

(가) 경조사별 휴가일수(복무규정 [별표 1]) (개정 2025. 2. 11.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5
	자 녀	1
출 산	배우자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	20(25)
입 양	본 인	20
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3

(5) 육아시간

(가)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

(다)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·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
(개정 2024. 11. 29.)